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숙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동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죄 예방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PTED, 셉테드) 개념과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셉테드 개념이 적용된 해외사례를 통하여 입증된 범죄 감소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효과 및 지역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우선 적용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안전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